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37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강승규·고동진·박상웅

최수진 • 조정훈 • 강명구

박덕흠 • 이종배 • 김재섭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로서,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등 공단은 기존보다 사업범위가 축소되었음.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 합하여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 원·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이행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성장이확대되면서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법률 제 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를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골재자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관리·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를 "관리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를 "관리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제8조(사업)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광물자원(해외</u>광물자원 및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 을 포함한다)의 탐사·개발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하 같다) 및 석재・골재자 워의----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 10. ---------관리_ 및 광물자원(석재 업의 관리·처분 및 광물자원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 공단법 부칙 공단법 부칙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 한 경과조치) ① ~ ⑦ (현행과 한 경과조치) ① ~ ⑦ (생 략) 같음) <삭 제>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 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

을 가진다.